

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총무처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부신  
청서식 및 제작비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  
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이나 시민·단  
체 등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표창장·상장·감사장 등으로 표창하  
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상패·부상 등  
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표창조례로서,
- 1966년도 10월 6일 조례 제454호로 제정된  
이래 7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그 내용  
과 용어 등이 불합리하고 미비점이 많아  
관련부분을 보완·개선하려는 전문개정안임.

나. 조문별 주요개정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의 목적, 적용범위,  
표창종류, 표창권자, 표창등의 수여대상, 표  
창대상자추천공적심의회 등에 대하여 총  
18개조문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주요개정내  
용을 보면,
- 안 제4조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장이던 것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3급이상  
시 소속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였고,
-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시정발전이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개인·  
단체에 대한 표창장수여규정과 훈련성적  
또는 각종 경연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공  
무원이나 기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상장  
수여규정, 그리고 지역사회사업이나 시민운  
동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  
체에 대한 감사장수여규정 등을 두고 있음.
-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시 본청에  
제1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를 두고 별도  
로 소속기관별 공적심의회를 설치·운영토  
록 규정하고 있음.

다.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  
무에 특히 성실한 공무원이나 사회에 공헌  
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거 시행되는 것

으로서,

- 해당 공직자 또는 시민·단체 등의 공적을  
표창·격려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기양양 차원에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서 때늦은 감은 있으  
나 현실에 맞도록 전문 개정한 것은 고무  
적이며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 다만, 몇 가지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에서는 수상자격자중 공무원  
의 경우 3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하고 있으  
나 재직기간은 비록 짧지만 특수한 공적으  
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에게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상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한기간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됨.  
둘째, 안 제10조에 근거한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인 표창장이나 상장, 감사장의  
표지 및 속면의 문양이 모두 같은 형태의  
시 로고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 액자로  
보관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도  
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니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75호
- 다. 제출일자 : 1999년 5월 20일
- 라. 회부일자 : 1999년 5월 24일

2. 제안이유

물품의 품종별 취득단가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소모품구매 취급부서를 다양화하며, 공사·용  
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 실시하  
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소모품 구입시 회계부서에 구매의뢰 없이  
수요부서에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  
(검수)시 회계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입  
회제도를 폐지함.(안 제28조)
- 비품 및 소모품의 품종기준중 일부를 변경

(제5조 관련 별표1)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30만원 이상이면 물품으로,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이라도 취득단가가 30만원 미만이면 소모품으로 간주함.

4. 물품구매 및 입회현황

'98년도 물품구매현황

(단위 : 건)

연도	총구매건수	100만원이하 구매	비율
'98	3,591	1,652	46%

○ '98물품구매현황에서도 보듯이 총 구매건수의 46%정도가 100만원미만의 소액건수로서 주로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등에 소요되는 토너, 드럼, 카트리지 등의 사무기기 소모품들이며, 품목당 금액 또한 10만원에서 30만원이하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98년도 회계공무원의 입회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물품	공사용역
계	11,515	6,346	5,169
본청·사업소	5,094	3,360	1,734
자치구	6,421	2,986	3,435

○ '98년도의 물품 500만원이상, 공사 1,000만원이상에 대한 서울시(본청 및 자치구)의 입회현황을 보면 약 11,515건(물품 6,346건, 공사·용역 5,169건)에 이르고 있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별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10조, 제28조
  -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2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 동 조례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88.5.7 조례 제2295호로 제정·공포되어 그 동안 4번에 걸쳐 개정·운영하여 왔습니다.

○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물품의 취득 단가기준이 10년 전에 설정된 금액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토록 하려는 것이며, 공사 혹은 용역의 준공검사와 물품의 납품검사시 회계부서에서 입회하던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먼저 제10조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임.

- 수요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회계부서의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야만 소모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수요부서에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하여 관리·운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소모품의 단가도 10년 전에 설정된 금액인 1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때늦은 감은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 다음은 제28조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임.

- 제28조의 개정내용은 공사·용역의 준공검사와 물품의 납품검사(검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검수)시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왔으나 이 입회제도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입회제도는 경리관이 대금지출에 앞서 공사 준공검사 또는 물품 납품검사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회계관계 공무원이 확인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왔는데
- 지방재정법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예산·회계 관련 상위법규상에는 없는 제도이며, 동 조례 제28조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음.
- 이는 상위법규에 없는 입회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감사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양하고 수많은 물품 또는 공사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소신껏 입회 확인하기에는 업무의

양이나 전문성으로 보아 한계가 있다고 보며, 이로 인한 형식적인 입회가 관례화 될 소지가 있으며, 검사자와 입회자 간의 책임성 회피의 우려도 있어 행정의 실효성을 세고하는 한편,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본 입회제도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입회제도의 폐지로 인한 사업주관부서와 업자간의 단합 등으로 부조리의 발생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품목단가가 30만원미만의 소모품을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수요부서의 실무담당자에게 산출기초의

적정성 확보와 회계처리 등 예산·회계관련 전문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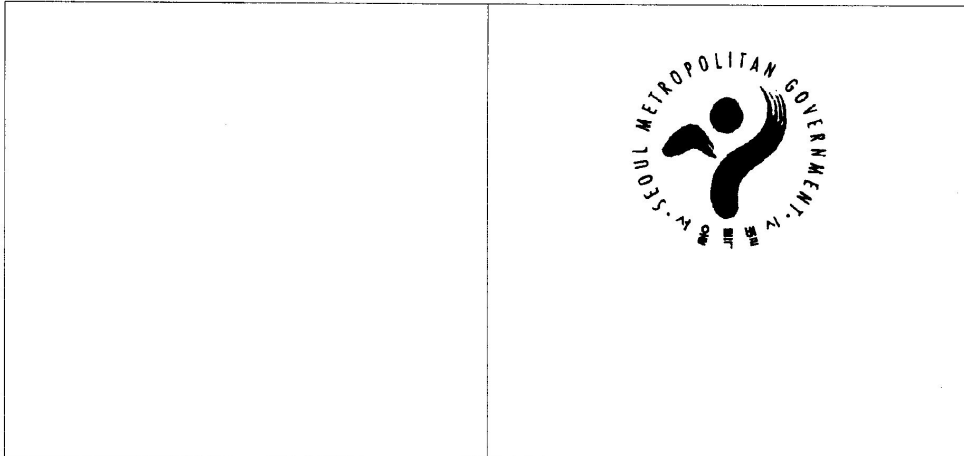
안 제7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표창장

<표 지>



※ 바탕 : 진감색, 시휘장 : 금박

(다음 페이지에 계속)